

예천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예천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4일

예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근거

-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 위	임용직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주요업무
보건소 (보건소장)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1명	2년	• 보건소 운영 총괄 및 관리 • 지역보건 의료정책 기획 및 시행, 연구 등 •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지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보건법 관련 보건소의 기능 업무에 관한 사항

※ 임용(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민간인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공무원의 경우)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응시연령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지역·성별	제한 없음(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공직선거법 제266조, 병역법 제76조, 치료감호법 제47조, 부패방지법 제82조, 정치자금법 제57조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세부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지역보건법 제15조)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학력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 준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 무 원 경력기준	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 준		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보건 · 식품위생 · 의료기술 · 의무 · 약무 · 간호 ·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필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응시 가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5 보수 수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개방형4호)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130%범위내에서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	68,106천원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 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증빙서류 유효여부, 임용자격 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및 능력요건 검증

□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5.11.4.(화)~11.18.(화)	11.14.(금)~11.18.(화)	11. 28.(금)	추후 별도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예천군청 누리집 「인사위원회 공고」란에 게시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일정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첨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5. 11. 14.(수) ~ 11. 18.(화) / 3일간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8:00까지

□ 접 수 처 : 예천군청 3층 총무과 행정팀

※ 우편접수 주소 :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행정팀 ☎ 054-650-608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함
- 우편접수 시 봉투 앞면에 '2025년 예천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10,000원의 예천군 수입증지 부착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2~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학위(석사박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 근무형태(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재직증명서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추가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응시자가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접수된 응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나 제출한 원본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재공고 시행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재공고없이 면접성적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본 임용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에 예천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관련 문의 : 예천군청 총무과 행정팀 (☎054-650-6083)

참고

예천군 보건소장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1. 기본 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보직가능 직급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 보건소장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4급)
5. 주요업무 내용			비중
1. 보건소 운영 총괄 및 관리			25
2. 지역보건 의료정책 기획 및 시행, 연구 등			15
3.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15
4.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15
5.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등			15
6. 그 밖에 지역보건법 관련 보건소의 기능·업무 등			15
6. 관련 분야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 보건의료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 지방행정 업무 전반의 기획·조정 등에 관한 일반적 지식			

II.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1. 필수요건	① 필수 자격증 : ☐무 ☒유 ※ 의사면허 소지자 ② 기타 필수요건 : ☒무 ☐유
2. 경력요건	(학력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의사면허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면허 소지자) - 관련분야에서의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